

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신고서				처리기간
				30일
신고인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번호:)		
신고기관	훈련기관명	(전화번호:)		
	소재지			
신고내용		※ 신고대상 훈련기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(별지에 작성 가능)		
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 신고기관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.				
년 월 일				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				
○○지방고용노동청장(지청장·출장소장) 귀하				
첨부: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				

(뒤쪽)

